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7402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97	정부	'24.12.17.	상정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 2.19.)
				소위 심사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2.25.)
	2208583	이헌승의원 등 12인	'25. 2.28.	상정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 8.21.)
				소위 심사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2.25.)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2.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한편,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사립은 시·군·구가 담당하여 등록 신청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명과 부위원장 1명을”을 “2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원장이”를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장”을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8항과 제9항을 각각 제9항과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또는 제7항의”를 “제7항 또는 제8항의”로 한다.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3. 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군수·구청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략)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1.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가.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국무총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2명을----------.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 1. (현행과 같음) 2.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신 설>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	<삭 제>

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 ----------.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 ---------- -------.
⑨ (생 략)	⑩ (제9항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	제36조(등록 등) ① ---------- ----------

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 설>	1. 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 설>	2.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신 설>	3. 국·공립 작은도서관: 시장·군수·구청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